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2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3월 13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3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의 대상과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근속 독려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선거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 능률성 향상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명시함.

나. 주요내용

-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18조제4항)
- 새내기 특별휴가 신설(안 제18조제5항)
- 주요 업무 수행 특별휴가 신설(안 제18조제7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3. 14.)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4. 2. 29.
- 회부일자 : 2024. 3. 13.
- 상정일자 : 2024. 3. 14.

2. 제안이유

-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의 대상과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근속 독려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선거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 능률성 향상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명시함.

3. 주요내용

-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18조제4항)
- 새내기 특별휴가 신설(안 제18조제5항)
- 주요 업무 수행 특별휴가 신설(안 제18조제7항)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혁신처에서는 주요정책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¹⁾를 추진하며 복무 여건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공무원 특별휴가를 확대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업무 능률성 향상시키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18조제4항에서 장기재직휴가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현 행>	<개 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1) **현행** 재직기간별 11일~21일 연가 차등 부여 → **개선** 저연차 구간 연가 확대

- 안 제18조제5항에서 새내기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신규 공무원 근무 처우를 개선하며 공직 적응을 도모하고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

※ 새내기 특별휴가: 5일 부여, 5년 이내에 분할 사용 가능

- 안 제18조제7항에서는 계속적인 비상근무 등 또는 선거사무 등의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행정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 새내기 특별휴가 신설,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공무원 특별휴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2]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평창군수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9
----------	-----

제출년월일 : 2024. 2. 2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의 부여 대상과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근속 독려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 능률성 향상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신설 및 일수 확대(안 제18조제4항)

나.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5일의 '새내기 특별휴가' 부여
(안 제18조제5항)

다.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에 대해 선거사무 종사 특별휴가 부여 내용 명시
(안 제18조제7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의 구분 중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7조제3항 중 “병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진단서”로 한다.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군수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5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재직기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6항) 본문 중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1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이상”을 “이상 30년 미

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국제 또는 전국단위 이상의 행사개최로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2.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폭설,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비상근무 및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법정 선거사무 수행 및 선거지원 공무원, 선거(투표,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

4. 그 밖에 군정 전 분야에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p> <p>제17조(병가) ①·② (생략)</p> <p>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병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p> <p>제18조(특별휴가) ① (생략)</p> <p>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시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 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p> <p>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p>	<p>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의 구분 중 유사경력을 말한다.</p> <p>제17조(병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진단서----- -----.</p> <p>제18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

<삭 제>

⑤ 군수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5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재직기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 있다.

⑩ 삭 제

⑪·⑫ (생 략)

다.

1. 국제 또는 전국단위 이상의 행사 개최로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2.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폭설,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지속적인 비상근무 및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법정 선거사무 수행 및 선거지원 공무원, 선거(투표,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

4. 그 밖에 군정 전 분야에서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⑨ (현행 제11항 및 제12항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

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이 영 배
연락처	(033) 330 - 2210